

의안번호	2219026
의 퇴 인	김예지 의원
회 답 일	2026.6.30.
추계번호	26B2666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조의2 (<u>직무지원인</u> 서비스의 제공)	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 <u>직무지원인</u> ”이라 한다)을 보내 <u>중증장애인인 근로자 및 사업주(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)가</u> 안정적·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<u>직무지원인</u>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,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9조의2(<u>직무지원인</u> 서비스의 제공)	×	• 미첨부 –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– 본문참조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(이하 “근로지원인”)을 보내 중증장애인인 근로자가 안정적·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‘근로지원인 지원 사업’을 시행하고 있으며, 동 사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임

* [참고자료 1]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개요

[표 1]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집행 현황

연도	계획액		전년도 이월액	계획 현액	집행액	전년도 이월액 제외	
	당초	수정				계획 현액	집행액 [실집행액]
2021	155,185	155,185	—	155,185	155,185	155,185	155,185
2022	204,713	204,713	—	204,713	204,713	204,713	204,713
2023	227,025	227,025	—	227,025	227,025	227,025	227,025
2024	242,458	242,458	—	242,458	242,458	242,458	242,458
2025	246,991	255,669	—	255,669	255,669	255,669	255,669

자료: 고용노동부

- 개정안은 현행법상 ‘근로지원인’이라는 명칭을 ‘직무지원인’으로 변경하면서 지원대상을 ‘중증장애인 근로자’에서 ‘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(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를 말함)’로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의 시행으로 근로지원인의 대상이 확대될 경우,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‘근로지원인 지원 사업’의 대상이 확대되거나 신규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 - －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직무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의 수, 지원 규모, 필요한 직무지원인의 수 등을 추정할 필요가 있으나,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한편, 중소벤처기업부는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10조의3¹⁾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‘업무지원인 서비

1) 제10조의3(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업무지원인"이라 한다)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·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·취소,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스 사업'을 시행하고 있고,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'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'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기존 사업의 재정지출도 변화할 수 있으나,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
* [참고자료 2]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 개요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

참고 1

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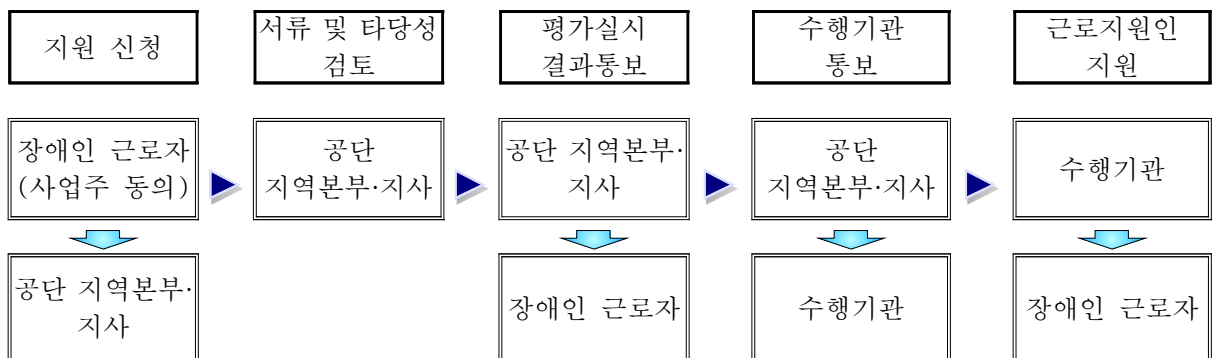
자료: 고용노동부

□ 사업개요

- **(목적)**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,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·지속적인 직업생활 지원
- **(지원대상)** 핵심적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부수적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근로자
- **(지원조건)** 주 40시간, 1일 8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
- **(지원내용)** 근로지원인 임금 12,539원(주휴수당 포함),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
- **(지원 유형)** 근로지원인의 지원 기능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

지원유형	지원기능	자격기준	주요 장애유형	급여기준
[1유형] 업무보조형	부수업무 지원	만 18세 이상	신체적장애 - 지체, 뇌병변, 시각 등	최저임금
[2유형] 의사소통형	의사소통 지원	전문 자격증 또는 경력	청각장애 - 청각, 언어	최저임금×120%
[3유형] 적응지도형	작업지도 및 정서관리	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	발달, 정신장애 - 지적, 자폐성, 정신	최저임금

○ (지원 절차)



참고 2

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 개요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□ 사업목적

- (목적)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보조, 의사소통, 경영지도 등 지원
- (근거)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0조의3(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)
* 법안 발의('22.9.6.) → 법안 가결('23.5.25.) → 법안 시행('23.12.21.)

□ 사업개요

- (지원규모) ('26) 17.8억원 (115개사 내외)
- (지원내용) 경영활동에 필요한 직무를 보조하는 업무지원인 제공
(월 최대 160시간)

구 분	지원 직무
업무보조형	고객응대, 행정보조(바우처신청, 행정기관 신청서류 작성 등), 이동지원(동승자가 동행해야 차량탑승이 가능한 경우), 서류정리, 정보검색, 기타 필요한 업무보조 등
의사소통형	수어통역, 점역교정 및 속기
경영지도형	공공조달, 법률·회계, 시장분석(가격결정, 트렌드 분석 등), 홍보 컨설팅(온오프라인 홍보, 고객 재방문 유도) 등

- (시행주체)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
□ 사업 지원체계

